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7월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정이유

○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

3. 조례 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('09.06.11 ~'09.06.30) **결과 :**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 : 붙임

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○ 도 경제교통정책과-5658(2008.12.01)호,
경제교통정책과-2804(2009.02.10)호

6. 참고사항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○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

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제2호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제2호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사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차고지설치 면제) 군수는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,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4조(의무 등)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별표 2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